

	<h2 style="margin: 0;">직인관리규정</h2>	규정번호	3-1-24
		제정일자	2006.11.25.
		개정일자	2024.09.01.
		개정차수	6차
		소관부서	행정지원처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공무에 관하여 교내외로 발송 교부 또는 필요한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의 규격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직인비치) 총장의 명의로 대외에 발송하는 문서, 제증명서, 상장 등에 날인하기 위한 직인과 전자문서에 사용되는 총장 직인의 인영은 행정지원처에 비치하고, 각 부서장의 직인은 해당 부서에 비치한다.

제3조(직인의 종류) 대학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1. 학교의 인(원형철인)
2. 총장의 인(사각직인)
3. 각 처장의 인
4. 부설기관장의 인
5.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서장의 인

제4조(직인 등의 규격 및 글씨) ① 직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총장직인은 그 일변의 길이가 3.0cm 부서장의 직인은 2.4cm로 한다.

② 직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가로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철인은 원형으로 하되 1편의 길이는 2.4cm로 한다.

제5조(직인의 등록) 총장의 인은 교육부에 직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. 직인이 분실 또는 못 쓰게 되었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어 다시 새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제6조(분실과 재조각) 직인을 분실하였거나 닳아서 재조각을 필요로 할 시에는 그 사유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다시 조각을 하여야 하며, 그 인영을 재등록한 다음에 사용해야 한다.

제7조(인영등록) 각 부서장의 직인 및 재 조각 된 인영은 [별지 제1호서식] 직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.

제2장 직인사용

제8조(직인사용) ① 직인사용자는 문서의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여부와 상장 및 제증명서발행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에 날인하여야 한다.

② 직인사용부서는 직인사용대장을 비치, 기록, 보존하여야 하며, 매 학년도 말일까지 당해 학년도에 사용하여 기록한 직인사용대장 사본을 행정지원처에 송부하여야 한다.

③ 직인은 장의 성명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날인한다.

제9조(취급상의 주의) 직인은 기관장을 대리하는 것이므로 항상 소중히 취급되어야 하며 날인한 문서 또는 증명서는 그 기관장이 책임을 지며, 인터넷에 게시되는 합격통지서나 납부금고지서 인영에 대하여는 발의 부서장이 책임을 진다.

제10조(직인관수책임) 이 규정 제3조 1호는 교무처장이 2호는 행정지원처장이 3, 4, 5호는 각 부서장이 보관 및 관리책임을 진다. 다만, 그 담당사항을 담당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직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전가할 수 없다.

제11조(직인생략) 대외 기관에 발송하는 문서는 직인을 날인함을 원칙으로 하고 직인의 날인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나 내부문서에는 직인생략 표시 및 사인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, 직인생략의 크기는 별표 1과 같다.

제12조(직인인영의 인쇄사용) ① 총장 직인의 인영을 다량의 증서, 수료증, 상장 등에 인쇄하거나 인터넷에 게재되는 합격통지서나 납부금고지서 등에 날인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할 내용에 대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, 이 경우 인영의 크기를 용지의 크기에 맞게 조절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인영 인쇄 사용증서의 명칭, 내용 등을 정확히 인쇄한 후 직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쇄처, 인쇄량, 사용량, 사용내역, 교부일련번호 등을 기록, 유지, 보관하여야 한다.

③ 직인인영이 인쇄된 용지는 직인에 준하여 사용부서장이 제10조의 관수 책임을 지며, 매 학년도 말일까지 당해 학년도에 사용하여 기록한 직인인쇄용지관리대장 사본을 행정지원처에 송부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6 년 11 월 25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8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제10조의 보직명 변경은 2020년 6월 1일부로 시행한 조직 개편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